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9. 3. 12. ~ 3. 18.)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

거 창 군



#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안  
번호 2019 ~

제출일자 : 2019. 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 계획·시행을 통한 주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
- 관련법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2. 보고사항

-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
-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계획

## 3. 개 요

- 계획수립 대상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 주요내용
  - 제3기 결과분석 및 제4기 계획 구상
  -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개년 계획(2019~2022)
  - 지역복지 욕구·자원조사와 분석(표본 400가구)

## 4. 그 간 추진사항

- 2018. 6. :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
- 2018. 7. ~ 11.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2018. 11. 29.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2019. 1. 14. ~ 1. 28. : 주민공고

## 5. 향후 추진계획

-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

#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사업 계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추진하는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군의회 보고건입니다.

## I 수립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39조(계획수립, 내용, 시행, 평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제22조(방법/시기/시행결과 평가)

## II 개요

- 대 상
  -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계획
- 계획수립 대상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 주요내용
  - 제3기 결과분석 및 제4기 계획 구상
  -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개년 계획(2019~2022)
  - 지역복지 욕구·자원조사와 분석(표본 400가구)

## III 그 간 추진사항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 가. 일 자 : 2018. 5. 14.
  - 나. 용역업체 : (사)지방정책발전연구원
  - 다. 금 액 : 금16,000천원 (군 100%)

- 지역복지 욕구·자원 조사
  - 가. 기 간 : 2018. 6. 1. ~ 6. 30.
  - 나. 대 상 : 400가구/ 표본조사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2018. 9. 17. : 계획안 1차 제출
  - 2018. 10. 11. : 시군 조정·권고사항 시달
  - 2018. 11. 1. : 조정·권고사항에 따른 수정 계획안 2차 제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회 및 심의
  - 일 시 : 2018. 11. 29.(목) 14:00 ~ 15:00
  - 장 소 : 2층 상황실
  - 위 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명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지역사회보장계획 공고
  - 공 고 명 :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 기 간 : 2019. 1. 14. ~ 1. 28.(15일간)
  - 방 법 : 거창군 공보, 홈페이지

## IV 향후계획

-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 사업추진

- 붙임 1.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1부.  
 2.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계획 1부.

## 관 계 법 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제39조

(지역복지계획 수립, 내용, 시행, 평가)

###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 ~ 제22조(제출시기, 절차)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9.19.>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상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